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의 본문 중 “구월동”을 “남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농산물도매시장”을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한다.

제23조제3을 다음과 같이 같이 신설한다.

③ 경매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반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과오납한 금액 전부
2.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 납부한 수수료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납부한 수수료 전부
4. 시험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5. 시험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제28조제1항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같이 신설한다.

라.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자거래 방식으로 매매하는 경우

제40조제3항의 본문 중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를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로 한다.

제44조제1항에 따른 별표2의 필수시설에 “하역인 편의시설”을 신설한다.

제50조제3항의 본문 중 “ 1년(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7월 1일까지 임용·임명 또는 허가를 받은 자는 1년 6개월) 이내에”를 “1년 이내에”로 한다.

제56조에 따른 별표4 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공판 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위반사항 27)의 본문 중 “한도를 초과하여”를 “금전을 징수하거나 한도를 초과하여”로 한다.

제56조에 따른 별표4 나.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위반사항 1)의 근거 법조문 중 “법 제82조제2항제2호의2”를 “법 제82조제5항제11호”로 한다.

제56조에 따른 별표4 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공판 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위반사항 19)의 라) 본문 중 “3개월”을 “6개월”로 한다.

제56조에 따른 별표4 나.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위반사항 3)의
라) 본문 중 “3개월”을 “6개월”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중앙도매시장) 법 제2조제3호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2. 서울특별시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 3. 부산광역시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 4. 부산광역시 국제 수산물도매시장 5. 대구광역시 북부 농수산물도매시장 6. 인천광역시 구월동 농산물도매시장 7. 인천광역시 삼산 농산물도매시장 8. 광주광역시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 9. 대전광역시 오정 농수산물도매시장 10. 대전광역시 노은 <u>농산물도매시장</u> 11.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제23조(실비의 징수) ① 영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실비(實費)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u><신 설></u>	제3조(중앙도매시장) 법 제2조제3호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2. 서울특별시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 3. 부산광역시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 4. 부산광역시 국제 수산물도매시장 5. 대구광역시 북부 농수산물도매시장 6. 인천광역시 <u>남촌</u> 농산물도매시장 7. 인천광역시 삼산 농산물도매시장 8. 광주광역시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 9. 대전광역시 오정 농수산물도매시장 10. 대전광역시 노은 <u>농수산물도매시장</u> 11.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제23조(실비의 징수) ① 영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실비(實費)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③ <u>경매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반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1. <u>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부</u>

현행	개정안
제28조(매매방법) ① 법 제32조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매매방법을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매 또는 입찰 가. ~ 다. (생략) <u><신 설></u> 제40조(공판장의 개설승인 절차) ① ~ ③ (생략) ③ 공판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u>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u> 제44조(시설기준) ①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u>2.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 납부한 수수료 전부</u> <u>3.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납부한 수수료 전부</u> <u>4. 시험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u> <u>5. 시험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u> 제28조(매매방법) ① 법 제32조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매매방법을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매 또는 입찰 가. ~ 다. (현행과 같음) <u>라.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자거래 방식으로 매매하는 경우</u> 제40조(공판장의 개설승인 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③ 공판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u>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u> 제44조(시설기준) ①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현행	개정안																										
그 임용·임명 또는 허가 후 <u>1년(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7월 1일까지 임용·임명 또는 허가를 받은 자는 1년 6개월) 이내에</u>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법 제82조제6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2. 개별 기준 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 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table><tr><th rowspan="2">위반사항</th><th rowspan="2">근거 법조문</th><th colspan="3">처분기준</th></tr><tr><th>1차</th><th>2차</th><th>3차</th></tr><tr><td>27) 법 제42조를 위반하여 <u>한도를 초과하여</u> 수수료 등을 징수한 경우</td><td>법 제82조 제2항제21호</td><td>업무정지 15일</td><td>업무정지 1개월</td><td>업무정지 3개월</td></tr></table>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2차	3차	27) 법 제42조를 위반하여 <u>한도를 초과하여</u> 수수료 등을 징수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21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그 임용·임명 또는 허가 후 <u>1년 이내에</u>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법 제82조제6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2. 개별 기준 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 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table><tr><th rowspan="2">위반사항</th><th rowspan="2">근거 법조문</th><th colspan="3">처분기준</th></tr><tr><th>1차</th><th>2차</th><th>3차</th></tr><tr><td>27) 법 제42조를 위반하여 <u>금전을 징수하거나 한도를 초과하여</u> 수수료 등을 징수한 경우</td><td>법 제82조 제2항제21호</td><td>업무정지 15일</td><td>업무정지 1개월</td><td>업무정지 3개월</td></tr></table>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2차	3차	27) 법 제42조를 위반하여 <u>금전을 징수하거나 한도를 초과하여</u> 수수료 등을 징수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21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2차		3차																							
27) 법 제42조를 위반하여 <u>한도를 초과하여</u> 수수료 등을 징수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21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2차	3차																							
27) 법 제42조를 위반하여 <u>금전을 징수하거나 한도를 초과하여</u> 수수료 등을 징수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21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법 제82조제6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2. 개별 기준 나.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법 제82조제6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2. 개별 기준 나.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현행					개정안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3) 법 제25조제3항제6호(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개설자가 허가조건에서 정한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법 제82조 제5항제1호				3) 법 제25조제3항제6호(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개설자가 허가조건에서 정한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법 제82조 제5항제1호			
가) 1개월 무실적		주의			가) 1개월 무실적		주의		
나) 2개월 무실적		경고			나) 2개월 무실적		경고		
다) 3개월 무실적		허가취소			다) 3개월 무실적		허가취소		
라) 3개월 평균거래실적이 월간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미달한 경우		주의	경고	업무정지 10일	라) 6개월 평균거래실적이 월간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미달한 경우		주의	경고	업무정지 10일